

관계부처 합동, 「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」 신고센터 참고사항 안내

■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 유형(아래의 대표 유형 외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 신고 가능)

구분	불법행위	위반법률(소관기관)
채용강요	-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, 강요 등을 하는 행위 - 채용 관련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, 수수하는 행위	채용절차법 제4조의2(고용노동부)
건설기계 사용강요	- 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	공정거래법 40조제1항(공정거래위원회)
불법집회 및 시위	- 신고 없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는 행위 - 신고내용을 위반하는 행위, 폭행, 손괴 등 질서문란 행위	집시법 제6조, 제16조4항(경찰청)
협박	-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 - 단체·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행위	형법 제283조, 제284조(경찰청)
업무방해(출입방해·점거)	-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	형법 제314조제1항(경찰청)

■ 신고 시 참고사항

- 사건내용: 구체적인 불법행위 내용을 6하 원칙(언제, 어디서, 누가, 무엇을, 어떻게, 왜)에 따라 가능한 상세히 작성
- 증거자료: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사진, 영상, 기록 등)를 첨부

■ 신고처리 절차

